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64호
----------	-------

2017. 03. 0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이광희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0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7년 02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02월 21일

-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광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을 개정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변경 (안 제5조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→ 제3조
- 광역자활센터 전세금 대여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2)
-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(안 제9조)
 - 용어 개정 : 이차보전(利差補填) →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

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 규정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- 충청북도자활기금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참여자 및 종사,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2016년도 말 2,013,459천원이 조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은 충북광역자활센터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와 의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3조 제3호에는, 용어 ‘도지사’가 최초로 사용된 바, 약칭 사용을 규정함.
- 안 제5조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규정을 인용한 ‘영 제3조의2’를 ‘영 제3조’로 개정함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3조(차상위계층) 법 제2조 제10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4.20.>]

제3조의2 [제3조로 이동 <2015.4.20.>]

- 안 제8조에는, 자금 대여 대상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도 포함되어 있는 바, 조 제목을 ‘자활기업에’를 ‘자활기업 등에’로 개정하

고, '전세점포 임대자금'이란 용어를 '점포 전세금'으로 개정함.

- '전세점포'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, 또한, 임대(賃貸)란 : '돈을 받고 자기 건물 등을 빌려주는 일'로, 용어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. 즉, 본 조항에서는 자활기업이 점포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, '임차 보증금'이나 '전세금'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. 따라서, '전세점포 임대자금'을 '점포 전세금'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8조의2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, 광역 차원의 자활지원사업을 기획, 추진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9조에는, '이차보전(利差補填)'이란 용어를 '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'이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.
- 안 제11조에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도 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고,
- 절차상, 사전 유관단체인 충북광역자활센터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자활근로사업단은 기존 사업비에서 전문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,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기금 활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, 이를 자활기업으로 한정함.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인건비 한시적 지원 대상을 자활기업으로 한정 변경(제3조의2 제6호)

7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」
- 「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원안+수정안)」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564호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: 2017. 02. 21.(화)

제안자: 박종규 의원 등

□ 수정이유

- 현행 규정 상,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만,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.
- 물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에는, 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
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
 - 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- 현 제도 상 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비에서 전문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, 자활기금에서 이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인건비 한시적 지원 대상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제외하고, 자활기업으로 한정 변경(제3조의2 제6호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의2 제6호 중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 을 “자활기업의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 1.~5. (생략) 6. <u>자활기업의</u>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	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</u>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	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<u>자활기업의</u>----- ----- -----

의안번호	제 56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광희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564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발의자 : 이광희, 이양섭, 김영주,
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,
장선배

1. 개정이유

-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을 개정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변경 (안 제5조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→ 제3조
- 나. 광역자활센터 전세금 대여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2)
- 다.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(안 제9조)
 - 용어 개정 : 이차보전(利差補填) →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
- 라.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 규정 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7호
- 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함.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하고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관리”를 “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제26조의 4”를 “제26조의4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의2 제목 “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”을 “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”으로 하고,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 제3조의2”를 “영 제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를 “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”을 “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,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이차보전(利差補填)” 을 “(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이차보전” 을 “금리차액 보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계획)” 을 “(기금운용계획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” 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<u>설치하고</u>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기금의 <u>운용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고, 그 운 용 · 관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26조의 4</u>에서 정한 사업 2. (생략) 3. 그 밖에 <u>도지사가</u>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. 5. (생략) 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----- <u>제26조의4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4. 5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 제3조제2호에서 “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” 이란 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	<p>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 ----- --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/p> <p>2.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</p> <p>3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2. 영 제3조-----</p> <p>3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역) ① (생략)</p> <p>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역은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역은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~ ⑤ (생략)</p> <p>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지방재정법</u>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지방재정법</u>」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의2(광역자활센터에 전세자금 대여)</p> <p>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,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한다.</p>
<p>제9조 <u>이차보전(利差補填)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이차보전</u>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<u>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 (<u>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</u>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금리차액 보전</u>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<u>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) ① <u>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</u> 2. <u>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 3. <u>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	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 <u>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12.10>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12.10>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3조(차상위계층)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“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5.4.20.]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4.20.>]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0.>

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2.6.12., 2015.4.20.>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